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4)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36.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3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3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24)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32)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41)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9)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13)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5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08)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64)
  5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5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5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55.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5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5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6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6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 

### 상정된 안건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 6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 6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 7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 7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 7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 7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	7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	7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	7
1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	7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	7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	7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	7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	7
1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4) .....	7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	7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	7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	7
1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	7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	7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	7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	7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	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	7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	7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	7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	7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	7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	7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	7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	7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	8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8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8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8
36.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8
3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8
3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8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8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8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8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8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8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8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8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8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8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8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8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4)	8
5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8
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8
5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8
5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8
55.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8
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8
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8
5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9
5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9
6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9
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9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9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9
6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	9

---

(11시10분 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터 시작해서 제2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 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2시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오늘 회의는 오후 5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9)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1)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0)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5)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64)
1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1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06)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2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5)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5)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36.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37.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38.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5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5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55.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5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33)
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22)

5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5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6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6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6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11시12분)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출 서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률상 위임입법의 형식인 대통령령과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제출 서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위임법령의 형식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요. 원래 법률의 체계가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각 부령, 시행규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을 보면 법률에서 바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체계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야 되고 대통령령이 다시 부령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률에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지금 이 법은 정상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바로 그냥 부령으로 위임하겠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처와 법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부에서 할 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일관된 설명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저……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유법민입니다.

보통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와 부령으로 장관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부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자체가 특정 부처에만 국한되고 또 업무의 성격이 단순한 서식이나 그 부처의 절차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대통령령보다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 대답이 되려면 다른 법률의 규정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제가 많은 법률들을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산업부에서 그냥 편의에 따라서 바로 부령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법률 체계상 자꾸 이렇게 체계에 안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 법률을 혼탁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체계를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앞으로 법령들을 최소한 산업부 내에서 정비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접 위임을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위임을 하는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신 답변도 대답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법률이 왜 이렇게 규정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회에 와 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편의에 따라서 입법을 해서 체계에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때마다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입법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쟁겨 보고 어떤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한규 위원**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 실제로 이렇게 통과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계를 갖추어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부한테 의견을 듣는 건 듣는 거지만 입법론은 국회 소관에 가까워서 사실은 대통령령과 부령과 다른 시행규칙의 체계를 잡거나, 특히나 대통령령과 부령 사이에서는 저희가 대충은 일종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약간의 형성권이 섞여 있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절차적인 측면이다라는 것들은 부령으로 하는 게 대충의 일감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입법론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아닌 것도 맞아서 이거는 정부의 의견을 듣더라도 본질적인 논의의 주체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건 국회가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이를 정부한테 가져와라 마라가 제가 보기에는 주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법안소위에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과 체계를 조금 잘 갖춰 나가자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산업부장관령으로 하는 게 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잠시만 보충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직접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 행정 집행에 필요한 절차, 서식, 기술적 사항은 법률이 부령에 직접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런 테크니컬한 이슈,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의논하기로 하고 우선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3쪽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외국인 간접적 지배권 취득 시에 국가안보위해심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는 국가안보위해 사유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산업부장관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제한 범위에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 등을 간접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인이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외국인투자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심의·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국가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접지배 투자구조 범위와 관련해서 박형수 의원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을, 김원이 의원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간접지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간접지배는 상당 부분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만 제한을 하게 되면 집합투자기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집합투자기구까지 제한하면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각각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입니다.

간접지배 투자방식과 관련해서 박형수 의원안은 ‘실질적인 지배’로, 김원이 의원안은 ‘주식 등의 취득’으로 간접지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같이 ‘주식 등을 취득’으로만 외국인투자 간접지배를 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은 참고 조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7쪽에 있는 수정의견에서 4조 3항을 삭제한 것은 현행 4조 3항이 위임의 근거인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인데 지금 개정안에 따른 위임근거하고 합쳐서 8쪽에 4항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로 할 것인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할 것인지 또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할 것인지 ‘실질적인 지배로 하는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형수 의원안 같은 경우 8쪽 하단에 있는 6항부터 9쪽에 걸쳐 ‘제3항과 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해서 제3항을 포함하고 있고 김원이 의원안의 경우에는 7페이지에서 개정안 4항에 보면 ‘2항 1호의…… 2조 1항 4호 각목의 투자’로 해서 3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행 4조 3항에 있는 투자를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할 것인지, 주식 등을 취득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인 지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부분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로 간접지배를 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한규 위원 지금 수정의견이라는 게 7페이지, 8페이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이 얘기는 없어진 거네요? 투자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은 다 빠진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수정의견으로 한 것은 수정의견 4조 3항에 있는 ‘외국인투자가 2항 1호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가 박형수 의원안·김원이 의원안 각각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4항 밑에 부분부터 ‘이 경우 외국인투자는……’ 해서 8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4항 후단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박형수 의원안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8페이지 하단에 6항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집합투자기구는 빠져 있고요. 김원이 의원안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표현한 것을 박형수 의원안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이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간접지배 투자구조 범위에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다가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자는 제 안에 동의하시는 거고 맞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동의합니다.

○ 김원이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냐, 주식 등의 취득으로…… 그러니까 간접지배 투자방식에 대한 내용은 제 의견보다는 박형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 김원이 위원 맞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 김원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구조 범위는 집합투자기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취득’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박형수 의원님 안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의……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동의합니다.

○ 김한규 위원 그런데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수정안의 몇 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정의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한규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데 문구가 정확하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게 10% 이상만 외국인이 투자하면 다 외국인투자기업이잖아요,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는 국내기업이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 10%만 있

다라고 하면 다 외촉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데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의도치 않은 경우까지 늘어나고 뭔가 지배하는 경우로만 한정돼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건 또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업결합 신고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 이상 지분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배’만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송재봉 위원 실질적인 지배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외투 안보 심사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 다른 국가의 입법례도 어떤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주식의 취득 말고도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외투 안보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기업의 기술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사회 선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도 그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실질적인 지배로 보고……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사가 6명인데 그중에 1명으로 들어갔는데 지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 1명이 갔으면? 이사한테 정보들을 다 제공하나요, 회사가? 그것을 유출하면 그것 자체로 처벌하는 거지. 지금은 이 실질적인 지배라는 게, 외국 사례라는 게 뭔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타 법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외촉법에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고 외촉법 전체에 지배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무역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고 통과시키면 나중에 실질적인 지배에 관해서 분쟁이 세계 불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 속기록 갖고, 이사 임명 1명 갖고 될 거냐, 이것과 같은 게 법원에서 근거가 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 1명이 선임됐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 지배로 보고 우리가 규제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해외 입법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 지배가 법에 있다 하더라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김한규 위원 그러면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동의한다고 하면 되냐는 거지요. 법안을 심사하는데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런 법안을 외국에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 사례도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겠다……

하위 법령에 어떻게 하는데요,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데?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것들은 상위 법령에서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지만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법안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하실 건데요? 산업부

가 마음대로 시행규칙에다 넣어요? 안 되잖아요.

○김원이 위원 김한규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김한규 위원 예.

○김원이 위원 5페이지에 간접지배 투자방식에서 시행령 5조 1항 2호에 따라 보면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를 설명해 놓은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 지배를 무슨 의미로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 지배라고 하는 게 법률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시행령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규율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현행 외촉법에서 실질적 지배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50%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인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제 기준이 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술을 가진 대상 기업의 정보에 접근을 하거나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안보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실질적 지배를 지금 이 법에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위법,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원이 위원 그러면 아까 김한규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 위임 조항을 어디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라 하면,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조항에다가 위임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여기 지금 수정의견에는 법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법 문구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거냐 하기 좀 애매한데 김원이 의원님 발의안에 보면 제5항에 4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섞으면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그래서 수정의견에 지금 문안이 없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조정안을 한번, 수정안을 줘 보시지요.

○김한규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법에서 대략적인 최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총주식의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포괄입법으로 이런 중요한 법률을 하위 법령에다가 그냥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동의합니다.

○송재봉 위원 해외 입법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비교한 자료가 있긴 한데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것은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의 규제만큼은 우리가 알고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이 대상이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잖아요, 결국 분쟁이 생길 나라들이. 그러면 그 나라보다 우리가 엄격하게 해 버리면 바로 무역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그런 것을 보고 미국이나 중국이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확신은 갖고 해야지, 그런 자료도 준비 안 해 오시고 그냥……

○**송재봉 위원** 지금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비지배적 투자의 경우 비공개 정보 접근권, 이사 임명권,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핵심업종 주식 1% 이상 취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주식 50% 이상, 50% 미만이나 이사회 주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영 의사결정·인사·재무·기술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저 정도로 뭔가 기준은 정해 놓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보면, 미국은 아마 판례에 의해서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달라서 우리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정도는 오늘 정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점심시간에 문구를 만들어서 2시에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고, 그러면 다음 건.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법률에 규정해서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가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11쪽의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 11쪽 27조 3항에 보시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에 있는 산하 심의기구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자구를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그 판단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쪽입니다.

간접지배 사전투자신고·변경신고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5조 1항 또 3항은 간접지배를 위한 외국인투자도 사전투자신고를 의무화하고 모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신고의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안 제5조 2항은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간접적 지배권 취득에 해당하면 이를 반드시 미리 신고하도록 해서 사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신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의무부과 대상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형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문언에 위임 목적 및 범위를 명시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가안보위해 우려 있는 경우에 변경등록 의무화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변경등록 사유 중의 하나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등록은 투자 내용상의 주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KOTRA 또는 외환은행에 의무적으로 서류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변경신고 외에도 간접지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등록기업의 미심의 주식 등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안보위해 심의를 누락하고 주식 등을 취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쪽의 수정의견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목적과 범위를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김원이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는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8쪽에 있는 '외국인투자가 또는'으로 되어 있는 안을 '외국투자가'로 한 것은 현행 2조에 있는 정의 조항에서 외국투자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9쪽에 있는 수정의견은 김원이 의원안과 동일하게 수정을 하였는데 '4조 4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안과 '4조 4항에 따른 심의 대상이 되는'이라고 표현한 김원이 의원안이 같은 취지인데 김원이 의원안의 표현이 조금 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낫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는 김원이 의원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간접지배 사전투자신고·변경신고 의무화 관련해서는 지금 수정하신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사전투자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의무 이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국가안보위해 우려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의무화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업의 미심의 주식 등 취득 금지하는 내용 관련해서도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0쪽입니다.

투자·변경신고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자·변경 신고 시 산업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체적인 요건을 판단해서 신고 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의 법적인 성질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정 요건에 한정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의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된 입법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해당 신고가 4조 2항 각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4조 2항 각호의 경우로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안전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의 판단인데 개정안의 취지를 봤을 때는 국가 안전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수정의견처럼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분야 투자 등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곽상언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21페이지 수정의견 예시를 보면 4항의 ‘다만’ 이하 부분에 밑줄이 쳐 있고 두꺼운 글자로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분야 투자 등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의 위치를 보면 국가 안전 유지라는 개념에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예시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상 지배권 취득도 국가 안전 유치고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도 국가 안전 유치로 보이는데, 제가 그냥 단어의 용례만 보면 국가 안전 유치는 앞에 있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개념 같은데요. 그래서 이 ‘등’ 자를 바꿔야 나중에 해석상 오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면 앞엣것 예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등으로 국가 안전 유지에’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이 단어와 문장을 최대한 살리려면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국가 안전 유지 등 영향을 고려하여’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는 이 조항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는 한 수백 건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준에 그냥 신고하던 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뀐다라는 거는 M&A를 하거나 그럴 때 타임라인의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수리하고 다만 그 기업이 해당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신고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투자제도가 상당히 바뀌게 되는데, 참고로 외촉법 4조의 표제는 아예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입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 업계라든지 다양한 데에서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 들어 보신 분이 있나요, 전문위원님이나 부처나?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유법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투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로펌들로부터 많이 의견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사모펀드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었고요.

이 조항의 취지는 M&A 같은 경우에 안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기업을 M&A 할 경우에는 안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안보 심사 결과 M&A를 해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자기완결적 외투신고를 바꾸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외국인투자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KOTRA나 외국환은행에 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외국환은행에다 해요, KOTRA에다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면 외국환은행이라는 게 그냥 동네 신한은행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서 외국인 투자 담당하는 데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형식적인 요건 외에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를 합니까?

저는 외국인투자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그런 다른 안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신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거를 이 외투 신고하게 하는 은행에서, 시중은행이란 말이지요. 시중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하는 게 맞나요? 굳이 그런 식으

로 절차를, 기존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안 여부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침해가 되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법령이 있는데 외촉법상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여쭙는 겁니다. 실익이 뭐가 있나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안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가 수리가 돼 버리면 그 안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대외적으로 정부가 마치 그 기업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M&A 주체가 사전에 안보 심사를 하고 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면 외부에서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건 정부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수리한 건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가 없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 창구 담당자가 안보 심사 대상인지를 외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현실적으로는 외국환거래은행에서 그게 안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M&A 같은 경우에는 그 M&A 하는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M&A 주체가 이거를 이 조항에 따라서 미리 신고하지 말고 안보 심사를 거쳐서 신고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규제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구 직원에서는 거를 수도 없는 현실인데 그냥 외부에서 보일 때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외국인투자의 신고 수리를 위해서 기한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규정을 만드는 게 맞냐, 저는 이걸 질문을 드리는데 뭐 로펌에서 괜찮다고 하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 자료를 공유 좀 해 주세요. 로펌에서 온 자료를 여기서 오픈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사실상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왔고요.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 수렴한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김한규 위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투자를 담당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로펌에서 외국인투자 하는 데는 몇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만한, 외국인들이 대형 로펌들에만 오고 거기서 담당하는 직원은 손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관하고, 통상적으로 전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견을 물어봤으면 긍정적으로 답을 했을 텐데, 저는 충분히 제 우려는 얘기했고 다른 분들이 동의하면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대부분 국내 소수의 대형 로펌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로펌들에서 M&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로펌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의견 들었을 때도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김한규 위원님께서 사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는 큰 그림 차원에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어떤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최근에 경제안보, 미중 간에 특히 핵심기술을 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하자면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 사전에 M&A 건 외국인투자, 특히 이런 핵심기술이나 민감 산업 분야에 들어올 때는 정부에서 이런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추세고. 사실 한미 협상하는 그런 콘텍스트에서도 이런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정말 촉진,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촉진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스크리닝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약한 그런 측면이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우선 또 다른 조항……

○장철민 위원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소위원장 박성민 예, 장 위원님.

○장철민 위원 사실 저는 실무 디테일은 모르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완결적인 신고가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게 되면 신고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일종의 행정 행위성이 생기잖아요. 법적 문제가 생길 때 되게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외국환은행이 서류를 대신 받는다든가 하는 절차 자체도 바꿔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신고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대행하는 주체들의 어떤 법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없을 텐데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돼서 수리를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했다든지 이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받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법적 권능에 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함이 생겨 가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이 조항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M&A 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신고하기 전에 안보 심사를 받으라는 취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외국환거래은행에서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없이 신고를 받고 있고 이 규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안보 심사 대상이 되는 건이 아닌 경우에는 다 외국환거래은행에 자기완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보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외국기업들은 국내 로펌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보 심사 이후에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완결 신고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해가 잘 되지는 않네요.

○소위원장 박성민 우선 다른 항 심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3쪽입니다.

보고·조사 권한 확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외국인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투자가의 모회사, 계열사 등에 대해서도 자료수집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뒤에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자료·통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안 제2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통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외환거래법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 자료 요청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은 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인이 투자할 자금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계획이 확정된 자금 외에 투자할 가능성 있는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법률 위반을 전제로 취하는 조치인데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5쪽부터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빼고 외국투자가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보고·조사 범위를 일부 한정을 했습니다.

26쪽의 관계기관에 또 유관기관에 자료 요구·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은 김원이 의원안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쪽의 김원이 의원안에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투자할 자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8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의무위반 행위가 없고 가능성을 기준으로 박형수 의원안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일반 외국인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이 부분은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자료·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 동의를 하는데, 다만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자료·통계 등 요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특히 기재부 한국은행, 산업부 KOTRA 간의 긴밀한 자료 공유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의 한은총재 등에게 외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현재 관세청이나 한국은행은 동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동의가 곤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이 투자할 자금 도입·사용·처분에 대한 사항 조사하는 이 부분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 이게 조사 범위의 과도한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의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시정명령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 개정안이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정부가 동의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유관기관에 한국은행을 추가하자고 해 놨잖아요. 거기에 국정원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국정원 포함도 저희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거 아닌데요.

○김원이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30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30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정안 28조 6항에서 시정명령이나 주식 등의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명령의 미이행 시에는 벌칙 등의 제재 처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서 시정명령, 양도명령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금전적인 유인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근거 법률에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인수·합병 중지조치명령 등 미이행 시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1쪽의 수정의견, 2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 측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연간 부과 횟수나 상한 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따라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규정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23조 1항을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주식 등의 양도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등의 양도명령도 시정명령 중의 하나일 텐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28조 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는 별칙규정이 있는데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는 별칙 등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도명령도 시정명령 중의 하나니까 원래는 이것도 동일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유법민입니다.

현행 외촉법상 시정명령 관련 규정은 28조 6항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등의 양도명령은 7항에 되어 있어서 근거조항이 달라서, 각각 시정명령과 양도명령의 조항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표현은 알겠는데 주식 등의 양도명령이 시정명령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법적 성질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법적 성질상은 크게 시정명령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법적 성질이 하나인데 이렇게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28조 6항에 따른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는 별칙 등 규정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에는 별칙 등 규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도 별칙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주식 등의 양도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시정명령 중의 하나인데 지금 해석상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는 벌칙 등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페이지 웨이출에 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벌칙규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인 양도명령 미이행의 경우에도 벌칙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정명령하고……

○곽상언 위원 이행강제금은 벌칙규정이 아니고요. 이것의 법적 성격은 행정제재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성격의 행정제재별이라고 하니까 벌칙규정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개정안 벌칙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뒤쪽 벌칙규정이요.

○곽상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

○장철민 위원 이행강제금 산정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세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해당되는 금원의 몇 %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게 계산이 곤란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정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사실 1일당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행강제금으로서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보통은……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원래 뭔가 이익이 되는 금원의 영점몇 %, 1%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입법례가 더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투자정책과장 박상희입니다.

이게 유사 입법례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어서 저희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입법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장철민 위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같은 경우에야 이익에 대한, 아니면 해당되는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뭔가 딱 명시적이지 않을 텐데 이것은 사실 일종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명령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해당되는 어떤 금액이, 기준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것 관련된 지분이 몇조씩 된다라고 하면, 몇천억만 되더라도 사실 하루에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약간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정부 측 답변을 왜 그렇게…… 명료하게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게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해서 1일에 1000만 원으로 규정을 했고 또 앞서 투자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유사한 산업기술 보호법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규모, 딜 사이즈가 크면 이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하려면 주식의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는데 시가로 계산되는 주식 같은 것은 매일매일 변하는 성격이 있고 또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公正가액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식 양도명령 같은 경우에야 나중에 관련된 시가나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더라도 1일 1000만 원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으로서의 실효성이 있기에? 저는 너무 낮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가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을 높이게 되면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타 입법례를 저희가 보고 그 타 입법례에 맞춰서 이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행강제금 외에 또 벌칙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다는 걸……

○소위원장 박성민 이해가 되십니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뭐 이해가 된다기보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식가치가 꽤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입법례가 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좀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곽상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도 동의하십니까?

○곽상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철민 위원 다른 입법례에서 조금 더 높은 이행강제금 규모가 있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약간은 상향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송재봉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외촉법은 일단 군데군데 심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검토부터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2쪽입니다.

외국인투자 제한결정 위반 시의 벌칙 부과 및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입법례를 고려해서 외국인투자 제한결정 위반 시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실제 행위자와 기업대표에 대해서 각종 의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데 두 개의 개정안은 법인대표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제한 심의를 우회하기 위해 고의·거짓·부정 등으로 신고·등록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 심의를 우회하고자 부정신고 등을 한 경우에 벌금 한도를 상향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법인대표·기업대표를 포함해서 처벌하는데 김원이 의원안은 법인대표·기업대표를 제외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개정안은 심의 전 또는 신고 수리 전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데 위원회 심의 자체는 재량사항이므로 신고 수리 전에 주식취득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

이 적절해 보입니다.

34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 박형수 의원안 단서에 괄호 있는 부분도 참고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곽상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마도 여기 28조 5항을 6항으로 바꾸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원이 의원안에서 28조 6항이나 수정의견의 28조 6항에 있는 것은 조문을 정리하면서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 별칙에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할 때는 현행 28조 6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외국인투자 제한결정 위반 시 별칙 부과 및 별칙 수준 상향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제한 심의를 우회하기 위해서 고의·거짓·부정 등으로 신고·등록한 자에게 별칙 부과하는 이 부분은 수정 제안에 동의합니다. 즉 고의·거짓·부정 신고·등록에 대한 동 별칙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신고 수리 전 주식취득 금지에 대한 별칙 부과를 위해서 의무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제가 별칙규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수로는 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별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의 한 종류인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는 별칙규정이 지금 없다고 했고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별칙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34~35페이지를 보면 28조 6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별칙의 내용이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양도명령의 경우에만 다른 시정명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더 높은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검토하지 않으셨으면 규정상 오류이기 때문에 35페이지에 있는 3호를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정부 측 취지는 둘 다 상향해서 징역 5년, 벌금 5억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개를 차별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곽상언 위원** 둘 다 5억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시정명령은 지금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양도명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안에 규정이 안 돼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곽상언 위원** 규정을 좀 분명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시정명령상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혹은 일부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시정명령 위반은 지금 별칙을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로 여기 되어 있는데……

○곽상언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자료 34페이지 보시면 박형수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에 시정명령 미이행의 경우에 그 렇게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똑같습니다. 제3호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현행을 보면 35조 3호에 28조 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28조 6항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28조 6항은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양도명령 미이행이에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현행 28조 5항입니다, 현행으로 하면.

○곽상언 위원 일단 규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왜냐하면 그게 26페이지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 박형수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28조 조문이거든요. 28조에 2항이 신설되면서 항이 하나씩 뒤로 밀렸습니다.

○곽상언 위원 항이 하나씩 밀리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양도명령 미이행 시에는 여전히 벌칙규정, 그러니까 징역형 혹은 벌금형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명령 미이행 시의 규정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 형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 하나씩 밀렸기 때문에 28조 6항에다가 28조 7항을 포함해서 양도명령……

○곽상언 위원 28조 6항 및 7항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양도명령도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그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수정하려면 28조 6항 및 7항 이렇게 나가야지 맞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책관님, 정부 의견을 충분히 검토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검토했는데요 이게 조항이 밀리면서……

○소위원장 박성민 조항이 밀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지금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곽상언 위원 제가 해석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법 개정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입법 공백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조문대비표에서 하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36쪽입니다.

수정의견 중에 3호에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를 규정을 하는 게 김원이 의원안 3호에 있는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 36쪽 맨 밑에 있는 5조 5항에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은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을 해야 그에 따라서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5조 5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7쪽입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비밀누설죄 및 양벌규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비밀누설 시에 벌칙 수준을 1년·1000만 원을 유지하고 또 양벌규정에 외국인옴부즈만 비밀누설에 따른 소속 법인·대표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비밀누설 시의 처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36조를 신설·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여기에 기업 대표를 포함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기업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외국인옴부즈만이 소속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기구는 기업으로 보기 곤란하고 단순 지원기관이므로 대표 관련 처벌규정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벌규정에 소속 법인·대표 처벌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양벌규정에서 외국인옴부즈만 비밀누설에 관한 벌칙을 추가해서 소속 법인이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기구가 단순 지원기관임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비밀누설 시 벌칙 수준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외국인옴부즈만 비밀누설에 따른 소속 법인·대표 처벌 관련해서는 동의가 곤란합니다. 즉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위와 같이 안 제36조 내 기업대표 미반영 시에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이 조문이 다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법에 34조에 거짓 서류 제출할 때 3년·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엣것 얘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 앞의 내용에 35조 2항의 수정의견 보면 여기 거짓 신고는 3년·3억이라서 이 법 전체의 신고 관련 거짓 서류 제출은 3년·3000인데 4조 4항이나 이 항목 만 관련돼서는 3년·3억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원래 있는 법 자체가 양벌규정이 너무 복잡해요.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

래 5년·5000만 원이었는데 이 법 위반해서 국외로 해외 자금 도파하면 1년이고, 그래서 이 벌칙이랑 양벌규정이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해 버리면 안에서 조문끼리도 복잡해지고 사실은 이 양형 자체도 중하고 안 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개정한 것은 높고 개정 안 하고 놔둔 것은 낮은 좀 이상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외촉법 관련된 벌칙규정은 원래 법 보면 32조부터 쭉 있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사실 이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경증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상언 위원 그냥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정부 의견을 보게 되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기구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대표를 명시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지원기관이면 비밀누설을 하지 않나요? 지원기관도 비밀누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라고 하는 개인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지 속한 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설명상으로는 보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기구라고 되어 있고 이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기관도 얼마든지 비밀누설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였냐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예. 고충처리기구라고 하는데 고충처리기구가 곧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외국인 고충처리기구라고 돼 있지만 법 보시면 그게 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입니다.

옴부즈만은 KOTRA 내의 조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그게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 있는 어떤 공적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대표라는 게 맞지 않아서 기업대표……

○곽상언 위원 그러면 지원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비밀누설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예,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어디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현행 제35조의 2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6조로 옮겨서, 신설은 아니고요. 현행 35조 2호에 있는 것을, 옴부즈만에 대해서 벌칙을 5년, 5억으로 올리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36조로 이동하자 해서 36조를 신설하자는 취지입니다.

○곽상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서일준 위원** 본부장님, 다른 음부즈만 제도에 양벌규정이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음부즈만 그다음에 금융 음부즈만 등 다른 음부즈만이 있는데요. 저희가 쭉 확인해 본 걸로는 양벌규정이 없는 걸로 지금……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순 지원기관의 기업대표까지 처벌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맞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처벌이라서 이번에 저희는 외국인투자음부즈만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조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지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행은 양벌규정이 있게 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송재봉 위원** 그걸 제외하자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외국인투자음부즈만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를 상대로 하면서 어떨 때는 기업의 어떤 민감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양벌규정을 두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신뢰 확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제외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양벌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여기 36조가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김원이 의원안을 토대로 만든 수정안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서 법마다 명시하겠다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개인으로 맡은 업무로 회사하고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회사한테까지 벌금, 양벌규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업무를 소속 직원한테 맡겨서 그 소속 직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게 양벌규정의 취지이고 조문 자체도 그 범인의 업무에 관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부즈만이 투자공사하고 별도로 아주 개인적인 음부즈만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공사에까지 양벌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여기서 양벌규정을 또 바꾸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정의견대로 해도 우려하시는 문제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막……

○**소위원장 박성민**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견을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1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시기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의견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투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서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규정하고 개정 이후에 추가로 주식이나 지분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과조치가 양 개정안에 없어서 우선 수정의견으로 2조(경과조치)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령 개정 소요 기간 등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경과조치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지금 심의는 마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 측에서 숙지는 다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지금이 2시 45분인데 4시에 본부장님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회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우리 회의는 이렇게 해 놓고 어디 가십니까? 우리 회의는 이렇게 해 놓고 다른 회의.....

○김한규 위원 다음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우선은 3시 50분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일단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심사를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64건인데 아직까지 3개도 못 했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9항까지 이상 6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43쪽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입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등의 국외유출범죄 벌칙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범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또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고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외 기술유출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목적요건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43쪽 맨 아래에 표

시된 것처럼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동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45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좀 늦게 발의가 되면서 그 전에 발의됐던 것들이 개정된 사항에 조금 늦게 심사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개정 전의 조문이 맨 왼쪽에 있고 맨 오른쪽 비고란 앞, 바로 옆에 개정 후 현행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들의 취지가 현행 조문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들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벌칙을 상향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쪽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당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이미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징역형 상향, 벌금형 부과기준 신설 등 이런 부분들도 지난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미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돼서 개정,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65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2배 내지 5배로 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65억 원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이 좀 부당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올린 것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한 50억 정도 더 플러스시킨 건데 지금까지 피해가 얼마인지, 이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걸 산정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65억 정도, 65억 이하로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65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액 또는 이익액의 일정 비율, 그의 2배 내지 5배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시를 했는데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개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언제 또 기회 봐 가지고 다시 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5억 이렇게 금액으로 딱 정하는 것보다는 이익과 손해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도 65억으로 정한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도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5억의 기준점을 정한 근거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감사합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말에 이 법안, 지금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65억은 두 가지 이유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이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긴 하지만 그 이익이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

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65억이 왜 정해졌냐라고 말씀하시면 미국의 유사법에 500만 달러가 벌금, 폐널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금액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70억이네, 지금은.

○**송재봉 위원** 환율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요.

○**송재봉 위원** 지금은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어쨌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오늘 5건도 못 합니다. 조금 속도를……

○**김한규 위원** 이거는 넘어가시지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종배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원장 박성민**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8쪽입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김태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처벌에 있어서 목적으로 삭제하고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동일하게 유사 취지의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49쪽부터 55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현행 조문을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최근 개정된 사항은 그냥 제외하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법안 개정되고 이제 시행된 지 두 달도 안 된 내용을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수석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가기술안보원 설립근거 마련하는 박상웅 의원안인데 이 사항도 동일하게 유사 취지로 개정안이 이미 반영이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중요핵심전략기술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외 유출 시에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핵심전략기술을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정의에 해외로 유출될 경우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소부장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은 현행법상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므로 현행

법상의 산업기술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핵심전략기술의 개념과 지정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필요시 핵심전략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서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쪽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조문들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67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68페이지에서 중요핵심전략기술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69쪽에서도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부장법의 핵심전략 기술을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봉 위원** 그러면 지금 소부장법에 의한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에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연계된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기술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기술 중에서 국가핵심기술 요건을 충족을 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핵심전략기술은 산업기술로는 적용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부장기술, 지금 발의해 주신 소부장기술은 산업기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지금 소부장기술이든 뭐, 여러 가지 기술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넓은 범위에서 산업기술로 일단 지정이 되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요건,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어떤…… 두 번째 부분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현행으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송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71쪽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절차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시에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나 후속 절차의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법원의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료 소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보다는 법률에 명시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3쪽입니다.

현행 법률상 자료의 제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명령 대상인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 비밀유지명령 또 취소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대상인 ‘산업기술’을 동일한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74쪽, 75쪽 그리고 76쪽부터는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해서 표현을 하였고 74쪽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보다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후속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이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안 제22조의3제3항 중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맞춰서 제22조의4 및 22조의5의 비밀유지명령 대상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동일하게 개정하여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송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개정 사항 몇 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개별 입법에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개별 입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산업기술에 대해서만 이 22조의3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서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기술 혹은 영업비밀이 분명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령상, 제가 앞부분을 못 봐서 그런데 산업기술 혹은 영업비밀이 무제한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을 보고 대상이 분명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산업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

이 규정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다른 여타 법들에서, 특허법이라든지 상생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법이 이런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안은 현행 여러 법들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 과정,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산업기술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정의가 돼 있기는 합니다. 2조에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술 중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라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은 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평행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산업기술보호법 현행법상 22조의4 이하에 보면 법원에 산업기술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을 상정을 하고 있고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다음에 제출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해석을 해 볼 때 산업기술은 좀 비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기술은 사실은 영업비밀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이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업비밀과 같이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 의견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답변에 의하는 경우에도 산업기술, 영업비밀이 담당자 개인 의견이지 법률을 보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판사의 완벽한 재량에 따라서 허가하기도 하고 허가 안 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러면 법 운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다른 입법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입법례는 언제 도입이 된 건가요? 유사한 규정이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허법, 개인정보 보호법, 독점규제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언제 도입된 것이며 지금 이 도입하자고 하는 규정과 어느 점에서 다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위원님 말씀 주신 특허법 조항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201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곽상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법에 이런 종류의 조항을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김한규 위원** 곽 위원님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는 그냥 수정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74페이지에 22조의3의 3항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수정의견이 특허법 132조랑 같기 때문에 그냥 영업비밀만 포함해도 다른 법하고 균형도 맞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산업기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체계·자구도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통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위원님, 제가 알기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수정의견은 저희 산업부 의견하고 같이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현행 산업기술법 체계를 존중을 해서 산업기술까지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산업기술 또는’ 이렇게 넣었군요?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예.

○ **김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표현 조금 때문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수정의견하고 정부의견이 같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9쪽에 부칙 사항으로 공포 후 시행시기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2권 1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도서·벽지 전력공급에 사용하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전력기금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올해 예산부터 운영지원 결손액·자가발전시설 기술지원 비용·투자비의 25%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전에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전기요

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이상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이게 아마 제 의견과는 관계없이 통과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금이라는 게 그 전력기금을 만든 취지 자체가 원래 전기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등이 개정되면서 계속 특별법을 만들거나 그래 가지고 자꾸 전력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둬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체적으로 애초에 전력기금을 만든 취지가 몰각이 된다는 것을 일단 하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농어촌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기요금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기금을 깨서 지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애초에 다른 곳간에 있는 것들을 끌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 전력기금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기본적으로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목적은 전력산업의 인프라 확충, 전력산업의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전력 부분에서 전력 소외계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저희는 포괄적으로 전력기반기금의 인프라 확충을 농어촌 기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가 작년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두고서 25%만, 정부 지원을 줄인 측면들이 있어서 계속 한전에…… 일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한전, 전기판매사업자의 의무라기보다는 국가의 의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전력기반기금이 전체 전기요금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3.7%에서 작년부터 2.7%로 좀 낮아졌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이런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과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실제로 국가가 전기 판매를 매개로 적립하는 돈이에요. 적립하는 돈인데 그것을 다시 전기요

금으로 전용을 해 버리면 두 차례 부채를 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전력기반기금을 국민들한테 별도로 다른 성격으로 부과된다는 부분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일단 구분해서 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곽상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특별한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고 저도 특별히 연구해서 알고 있는 것인네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유의 법안이 나오면 정부 측에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 두 번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기요금 지원이라기보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을 함으로써 농어촌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전기수용가로부터 받게 되는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손액을, 차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엄밀하게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근거 남기려고 발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어촌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는데 어촌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전력산업정책관 최연우 국장입니다.

저희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지역하고 그다음에 산간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기를,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일준 위원**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전기라든지 어촌 전기라든지 이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같은 어촌에 해당돼도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는 주로 자가발전을 통해서……

○**서일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공급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독점판매사업자 지위를 주면서 전기공급을 하게 하는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 이런 구분 없이 전기공급을 일반적으로 하여야 되는,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한전이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고요.

다만 1인 가구, 즉 농촌지역이라든가 어촌 같은 경우에도 1인이나 2인, 완전 독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가구가 적게 있는 지역이라도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체 내부적인 규정들은 갖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제가 질문이 조금 그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조금 틀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촌 전기나 어촌 전기 감면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답을 해 달라기보다는 이것 관련 자료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이해를 했습니다. 농사용이 농사용(갑)이 있고 농사용(을), 그러니까 용도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농촌의 영업과 관련된, 미곡처리장이라든가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좀 감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일준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심사를 할까요?

○**곽상언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성민** 법안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서일준 위원** 이거 우리 김원이 간사 법안 같은데.

○**김한규 위원** 저는 김원이 위원님이 좀 더 무서워 가지고……

(웃음소리)

저는 실제로 한전이 전기 공급을 수익성이 안 되는데도 공급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회사인 한전에 계속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봉 위원** 저도 워낙에 산간벽지 출신이라 저는 동의하고요, 이건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제가 설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소위원장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은 동의를 하신다고?

○**이종배 위원** 뭐에 동의, 반대에 동의요?

○**송재봉 위원** 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 위원님은 명확하게 반대시다?

○**곽상언 위원** 예, 저는 반대합니다.

○**이종배 위원** 질문 좀 할게요.

25%는 한전에서 부담하던 것을 전력기금에서 다 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연간 얼마나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연간 500억 정도 됩니다.

○**이종배 위원** 한전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전이 지

금 흑자 내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한전이 최근에 유가가 좀 내려가서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누적 적자가 35조 이상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누적 적자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좀 정부에서 대주다가 그것 생기면 또 한전에다가 부담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조정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한전에 이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부담하다보니까 한전이 적자가 심해 가지고, 목적은 한전하고 정부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한전 적자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 정부에서 전력기금에서 다 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정책관 최연우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작년까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고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전이 25%를 부담을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정 당국에서 25%는 한전이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부담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과거처럼 국고에서 지원을 100%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부 측은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도 전력기금에서 100% 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맞습니다.

지금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가 현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5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 25%를 부담을하게 됐던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도 100% 내면 되잖아요, 전력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예산 협의 시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재정 여력상 한전이 25% 정도는 부담을 해라라고 결정을 해서 25년도, 26년도 예산에는 한전이……

○**이종배 위원** 재정 당국의 재정 여력이 어려워 가지고 한전에 부담시켰던 것을, 그런 거지요? 올해부터 부담시킨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전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다가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못을 박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규정 바꿔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겠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기재부 의견은 저희가 조회를 했었고요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 입장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

재부에서 문서로 자기네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전과 산업부가 힘이 없으니까, 기재부한테 밀리니까 이 법에다 좀 명시를 해 줘서 우리가 기재부에 밀리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뜻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은 저희가 보기에는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한전이, 전기판매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고 결손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은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과 철학을 담고 있었던 점과……

○이종배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데서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했어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또 농촌만 딱 잘라서 농촌에서는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100%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농촌지역보다는 주로 도서지역들에 거의 대부분 지원인데이요. 도서지역에는 한전에서 전력인프라를 깔 수 없어서 별도로 아마 발전시설이라든지 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도서지역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한전도 누적 적자가 35조 되지만 국가에서도 국가부채가 내년도에도 145조 얼마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감안 안 해요?

어쨌든 우리는 산자위니까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법을 개정하는 데 너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잘 해 왔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한전에 부담을 시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다가 규정을 하자라는 것이 조금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산업부가 원래 힘이 없으니까 산업부에 힘을 좀 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송재봉 위원 지금 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25%면?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24년도에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던 규모는 약 1629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한전이 25% 부담하면서 대략 11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5%라는 비율은 전체 중에 연료비에 해당하는 비율만 25%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전 부담 비용은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한전이 대략 50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곽상언 위원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가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곽상언 위원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장철민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반대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요? 어디 갔다 오셔 가지고……

○김종민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저는 형식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

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법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도서지역에서는 일반회계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지 아무리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해도 기업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 이건 국가가 맡는 게 당연한데 저는 통과할 때 통과하더라도 법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조의2 규정인데 20조에서는 1·2·3·4항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한다, 전기사업자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조의2에서, 그러니까 위에 20조는 전기사업자가 지원한다, 20조의2는 이렇게 법개정을 하면 다시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해서 이게 약간 서술어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지 괜히 두 단계로 법 구성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조문 정리를 해 가지고 20조에다가 5항 같은 것 만들어서 ‘1·2·3·4항의 경우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사실 논리체계는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문 구성이 되게 이상합니다, ‘전기사업자가 전액을 지원한다’ 바로 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라.

○**소위원장 박성민** 어차피 과상언 위원께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면 원래 전기요금에 두 가지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기본요금이고 하나가 전력량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뭐냐 하면—한전의 설명입니다—기본요금은 전기요금 규정을 보면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별도로 받는 금액을 기본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의 실제 영업 방식을 보면 해마다 설비 증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돈은 계속 받아 가요. 그래서 이 용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쓰이더라도 이게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말씀만 좀 보탤게요. 곽상언 위원님이 이유를 얘기 안 해 주시니까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서·벽지·농어촌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전기요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어서 한전이라는 대표기업이 지금 재생에너지 내지는 어떤 에너지 전환 시대에 글로벌 경쟁의 대표주자로 나서는 데 상당히 발목을 잡히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쪽이니까, 방향이.

제가 보기엔 이런 문제들, 특히 그동안의 누적 적자는 결국은 산업용 전기는 산업부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을 한전이 대신한 것이고 가정용 전기는 복지부에서 복지를 한 것을 대신한 거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했던 것이 누적돼서 쌓여 있는 게 지금 한전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푸는 논의도 해야 되는 마당에 특히나 도서·산간·벽지 이렇게 분명하게 명분이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백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곽상언 위원님이 분명히 반대는 하시지만 저 반대 의견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토론하면 바뀔 만한 의견이 있고 토론해도 소신이 별로 변경이 안 될 만한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적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서·벽지 전기요금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국가가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체계 설명을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하나의 판매회사가 전국에 다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리고 한 판매회사가 용도도 정하는데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예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를 지원해 준다면 그거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를 깎아 준다면 그거는 산업부가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다 논의가 섞여 있어서 벌어지는 문제고.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바꾼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고 한전은 이미 그 명목으로, 그러니까 전기공급비용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이미 받아 갔다입니다. 수취해 갔는데 별도의 명목으로 그러니까 전력기반기금까지 헐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와 관련해 갖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기요금 결정체계하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원가배분할 것이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결정들이나 분석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별개로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의 최종적인 전기공급은 한전에다가 다 맡길 수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전이 들어간 비용은 추가적으로 전기용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총괄원가로 반영이 돼 갖고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이 도서지역에 있는 국민들 말고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좀 줄이자고 해서 그거는 국가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를 용도별 요금제로 규정하고 있는 한 용도별마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차보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데 한전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교차보조를 주장하고 불필요할 때는 교차보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용도별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한전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는 정반대로 주장할 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좀 봐 주시고, 제가 기회가 닿

을 때마다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저희는 이 건……

○**소위원장 박성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는데, 사회자 입장으로서는 의결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 몇 분 안 계시는데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님도 계속 심사하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예.

○**소위원장 박성민** 계속 반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3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PPA가 허용되어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발전량이 부족할 시에는 현재는 한전에서만 전력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부족 전력의 전력시장 구매를 허용함으로써 전력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언 위원**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찬성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독점적 판매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시켜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부의 범위 내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범위 내에서 독점판매권의 예외를 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판매권을 폐지하고 판매회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한 건데요. 실제로 전기사업법을 보시게 되면 이 전기판매 사업자를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해방 이후로 지금

까지 한전만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한전을 온전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난다면 왜 별도의 판매사업자를 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답변드릴까요?

○**곽상언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신 말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전기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는 한국전력에만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전 허가, 판매 허가와 유사한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PPA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판매까지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조항처럼 한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전력 도매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분산특구, 구역전기사업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한전의 독점사업들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들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의 한전 독점구조를 깨뜨리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구조 개편 논의와 같은 큰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독점 완화 효과가 있는 소비자 경쟁 또 소비자 후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방식을 전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드리면, 지금 한전의 독점판매권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전기 판매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독점판매권의 예외적 성격의 규정을 통한 판매액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직은 예외적으로 후자의……

○**곽상언 위원** 그 비율을 좀 확인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후자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곽상언 위원** 정말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무슨 혜택을 주거나 제도상 변경을 주거나, 감독기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전은 지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감독기관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그런 효과를 내려면 독점판매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5쪽입니다.

개정안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 시에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서 매출액을 추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료 거부, 허위 제출도 정액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정률·정액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서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 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인 자료제출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사업법 등 타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그런데 현행 배전사업자가 한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현행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밖에 없는데 유사한 사업자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마나 한 규정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도록 하면서 허종식 의원안은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김교홍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 전력자급률 제고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에 고려할 요소로 국가균형발전, 송전·배전 비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에 대한 지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 예정으로 권역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3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고려 시에 지역적인 범위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의 차이가 있어서 전력자급률을 산정하는 지역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8쪽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 때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정 지역 구분을 넣을 경우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생길 수 있고 이에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대신에 ‘지역별 전력자립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김원이 위원께서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차등요금제 도입이므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방침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의 조문대비표에는 지난번 소위 때 정부가 제시했던 의견을 정리해서 넣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전력계통의 지역적 상황이 지역의 행정적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여러 혼란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요인들은 분명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이라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조에 ‘지역별 전력자급률(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교홍 의원님과 혀종식 의원님의 동의 협의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곽상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만 이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회의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키우면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그리고 남으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자가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상언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자가소비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지요.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전기 발전한 것은 한전에 팔아야지요. 전기는 한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자가소비가 분명하게 있고 자가소비할 수 있고요.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전에다 전력을 팔아야 됩니다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수용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붕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다 굳이 안 팔아도 자가소비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판매는 한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다른 주체,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이 구매한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한전으로부터 별도로 전기를 구매해서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의 이동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이동속도를 시간 단위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업이 소위 망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망사업이고요. 전기의 이동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면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망에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전기는 소비처에 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력망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곽상언 위원** 전력망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당연히 송전선이 있고 배전선이 있으면 발전설비와 동시에 최종 소비처로 가게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그것은 망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둔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지가 가까운 곳은 좀 다른 취급을 하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곽상언 위원** 이것이 이론상 가능합니까? 이론상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금은……

○**곽상언 위원** 두 가지 때문에 불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망이 건설되어 있고 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이 내용은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전기 이동속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전기를 보내려고 그랬을 때는 전력망이 없는데 전력망을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

○**곽상언 위원** 전력망이 없는데 어떻게 전기가 이동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러니까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송배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때 발생하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그 인근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송배전 비용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이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배전 회피 편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산지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법안의 내용이나 이 법안의 내용을 듣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알려 주시고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노력을 취하셨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전의 독점판매권만 깨면, 그러니까 정부가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전기판매사업자를 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런 실증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정부안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괴롭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법의 취지가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 꼭 좀 확인하셔서 숙지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성민**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정안은 정부 측 의견이 소위원회 9쪽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조의 지역별 전기요금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다시 한번 전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죄송합니다.

정부의 최종 의견은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는 아니고요. ‘송전·배전 비용, 지역별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장철민 위원** 그것은 조금 이상해지는데……

○**소위원장 박성민** 장 위원님.

○**장철민 위원** ‘고려하여’와 ‘위하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원래 45조 법 구조를 보니까 이 지역별 전기요금의 목적 부분에 대한 개정 의견이에요, 여기 표현에 있는 것은. 그리고 ‘송배전 등을 고려하여’는 뒷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은 이 조항 뒤쪽에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수정안은 앞에 있는 목적 문구에 있는 거라서 저는 목적에서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이 정도는 동의가 될 수 있지만 뒤에 약관 작성할 때 고려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라 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조항으로 들어가는 수준은 저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명시적 고려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에 원래 그런 식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었던 적도 없고요 원래 개정안의 취지도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장철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최연우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실 김교홍 의원하고 허종식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목적 조항에는 사실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제고하기 위하여’라기보다는 이것은 수단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대안으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로 말씀을 드렸고 두 의원님들께서 그게 더 적당하다라고 실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법의 문언 자체가 일종의 기본공급약관 작성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방식으로 열거되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은 원래의 기존 개정안과는 내용·취지가 완전히 바뀌는 수준의 대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의 논의 내용들하고도 사실은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문언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12항은 통과를 시키고 13·1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12항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외촉법 제가 3시 50분까지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부 측 들어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대안 가져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가져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본부장님, 설명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먼저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경영상 지배권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는 수정 의견처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한정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너무 규정 자체가 상세해서 법마다 넣기 어려워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걸 양해를 할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현행 시행령을 보면 외투 안보심사를 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고 대통령령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해 가지고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열거된 내용은 주식의 50% 이상, 또는 50%가 아니라도 최대주주로서 기업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령에 정해진 안보심사 대상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철민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심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기준 이슈도 있었고요 수리 필요한 신고의무 관련된 절차 같은 것도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께서 이게 충분히 해소가 안 되지요?

○**김한규 위원**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거지 시행령에 들

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건데, 그런데 여전히 너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하는 것은, 지금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사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것은 공모펀드, 사모펀드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포함하는데 사실상은 사모펀드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은 법에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공모·사모가 다 포함되고, 그러면 해당 펀드가 특정 회사의 50% 이상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공모펀드에 외국인투자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포함이 되어 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의 공모펀드, 큰 펀드에 들어갔고 그 공모펀드가 국내 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일단 법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공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펀드가 M&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보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김한규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규정상 그냥 50% 이상 최대주주가 되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적하고 관계없이 소유 지분을 기준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여기 시행령에 보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요. 이 조항은 M&A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규정 자체는 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민 위원** 솔직히 저는 규정보다 전체적으로 거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합투자기구라고 해도 방금도 공모펀드, 사모펀드 얘기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사모펀드에 외국인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LP들이 있습니다. LP들이 있기 때문에 LP들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그냥 국내 사모펀드라고 해도 이 트랙에 탔다가 내놔 봐, 이 절차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심만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안보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예를 들면, 이게 사실 고려아연 건 때문에 입법 보완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무슨 방산산업이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본원적으로 사실은 안보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

기 아까 기준 같은 것들 보니까 첨단산업 관련돼서 국가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방식으로 그런 기술이다 하면 사후에 지정될 수도 있는 거고, 사후에 신청·지정돼 가지고 끼워 맞추면 이 트랙에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있는 기업이나 원래 있는 분야도 지정이 안 돼 있다가 사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제한 업종에 사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라고 저희가……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변경 심사나 신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게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법안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아까 벌칙 조항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시 주신 것에도 서류, 4조 4항 심사와 관련된 것은 3년·3억인데 나머지 법에서 거짓서류 관련된 것은 3년·3000이라 이것의 차이점이나 논리적인 충돌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주신 것에서도 똑같이 35조 2항 2호에 이것 그냥 그대로 있고, 이것은 3년·3억이고 원래 있는 벌칙 34조 같은 경우에는 거짓서류 제출자에 대해서 3년·3000이라 이 논리적인 헷갈림은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입니다.

신고 관련해서 안보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벌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35조 2항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3년·3억으로 옮긴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4조 5항도 그렇고 이행강제금도 또 남아 있고 벌칙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소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마지막 발언만 한번……

○**소위원장 박성민**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본부장님하고 이하 국·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법을 발의한 제가 봐도 좀 답답하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위원장님, 사실은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다음번 소위 잡힐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법을 다시 한번 다뤄 주셨으면 싶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다음번에 꼭 준비 좀 잘해 오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유법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정책관님이 오늘 오전 내내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이걸 재상정해도 그런 준비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우리만 팬히 이 위원회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만 허비된다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 이걸 어떻게 상정하겠습니까?

○**김원이 위원** 그리고 오늘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 있잖아요. 김한규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조항에 대해서 해소 방안까지 같이 만들어 와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계속 심사하시지요.

○ 소위원장 박성민 외촉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차관님 오십시오.

오늘 회의는 5시까지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1쪽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술개발, 설비 구축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제품 상용화까지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겸 토의위원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이 위원 의견 없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이상 2건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쪽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초과로 확대할 경우에 현행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주민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요건을 완화해서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고 4분의 3 이상 혹은 100분의 80 이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일단 안태준 의원안에 기존 정부가 동의 입장을 냈습니다만 안태준 의원안 유지 입장 을 견지합니다. 다만 제3항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법률 문안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지원금은 산식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 및 공동 지원사업 비중이 주민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즉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칙의 제2조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칙의 제2조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재봉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일부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갈등이 오히려 해소되지 않고 막상 지속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00%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 높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돼 있어서, 또 맥에 없으신 분도 있고 동의를 100% 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분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100% 체제하에서도 논란이라든가 주민 합의를 완벽하게 도출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원이 위원** 10항을 아까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 법안 자체를 표결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의결 처리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10항을 다시 한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한규 위원** 아까 반대하신다고 명확하게 했는데……

○ **소위원장 박성민** 반대를 지금 몇 번을 말하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 **김한규 위원** 입장을 바꾸시는 겁니까?

○ **곽상언 위원** 반대하는 취지는 유지하고요. 다만……

○ **김원이 위원** 법안의 처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아까 사실은 곽상언 위원 혼자서 반대를 하고 다른 분들이 다 찬성하는 의견을 내 가지고 제가 그냥 의결을 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곽상언 위

원님을 존중해서 내가 계속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김원이 위원 제가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이 있으셨는데 회의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로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곽상언 위원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은 찬성한다는 뜻이지요?

○곽상언 위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6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소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소 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규정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으므로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 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1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신에너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률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영역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 관리사업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4쪽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 및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른 부과 입법례는 25쪽의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이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처벌규정 조금 바꾸는 걸로 법안 내는 것 자체에 되게 회의적인데, 그게 실제로 많이 있어서 뭔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하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동의를 할 텐데 이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실제 저희가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가짜 석유라든가 이런 걸 근절할 때 석유관리공사의 인증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적발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전수로서는 저희가 데이터는……

○**김한규 위원** 아니,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석유공사 이름을 허위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규 위원** 있기는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있지도 않은 걸 왜……

○**곽상언 위원**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이따가 하세요. 먼저 좀……

○**곽상언 위원** 예.

○**이종배 위원** 유사명칭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국석유공사하고 유사명칭, 이게 좀 규정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디 다른 규정에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예를 좀 들어 보시지요. 지금까지 위반 사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유사명칭을 써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혹시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유사명칭에 관련해 가지고는 명백하게 정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제처에서 유사명칭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라고 하면 한국석유공사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빼고 그냥 석유공사라고 하거나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그걸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사명칭 사용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유사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금액 지침에서는 국가 정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공사, 공단 등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를 좀 깨치는,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할 소지가 있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급 범위를 정해서 이런 관련된 규정들은 갖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데 사칭을 해서 석유 관련 사업자들이 한국석유공사라는 이름을 도용하거나 또는 자기 사업에 유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는 단지 명의도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정도의 범칙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형사 문제인데,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단지 무슨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조율 하는 거는 지금 논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유공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런 게 그 유공하고 한국석유공사하고 혼동하는 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마 스미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스미싱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사례는 많이 나오고……

○박상웅 위원 그런 건 형사소송으로 그냥 구속을 시키든지 해야지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이것 이야기가 안 되잖아.

○곽상언 위원 제가 지금 이 법을 보면서 500만 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이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에는 50만 원만 있으면 되네요.

최소한 이런 과태료 상한을 정하려면 이 이름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손해액을 산정해서 기준으로 삼아야지 저 같은 사람도 50만 원 주고 이런 이름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끔 법안을 마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이 위원 이것은 계속 심사하시지요.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이런 과태료 상한액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이 위원 곽상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곽상언 위원님께 법안을 하나 좀 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3권 1쪽입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고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기산업 관련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정단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립 인가와 관련된 규정은 본칙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봐서 2쪽에 수정의견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하는 17조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회를 설립한다라는 조항으로 수정의견 드립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차관님, 이것 법정단체로 바꿔 주는, 상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 관련 협회나 단체들이 한 13개 정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산업에 있어서의 공통된 목적 그다음에 표준품셈이라는 공통의 사업들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게 법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양성, 교육훈련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법정단체 지정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법정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나 지원이 됩니까? 방금 예산, 인력양성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법정단체로 전환을 시키면 산업계 실태조사라든지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위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업종단체로서 관련된 법상의 의무라든가 조건들, 서류 제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의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규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전기협회가 있는데 이 전기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시킨다라는 데에 다른 단체들도 동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다른 단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요? 통폐합시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존의 단체 중에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통폐합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정으로 그렇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한전기협회에 대해서만 법정단체로 지정해 주는 겁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사실은 연합회 역할들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단체화시킴으로써 이제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법적으로 그런 연합회로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3개 단체가 대한전기협회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공공성에 동의하고 법정단체 지정을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관련 단체·협회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할 수……

○**김정호 위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나요? 13개 단체가 동의했다는 회의나 또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저희한테 지금 데이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거나 확인시켜 드리도록……

○**김정호 위원** 추후 제출 바라고요.

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또 그런 유사 사례가, 산자부가 관련된 단체들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준 사례 또 지원 현황 이런 것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뉴스를 보면 대한전기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된다고 전기 관련 단체 협의회들이 자기네들 회의를 열고 한전 김동철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대한전기협회에서 4월 15일 날 의결을 그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연합회 내부 규정이라든가 정관 규정에 따라서 별도 선임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 정관이라는 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한국전력 사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직 그 정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지금도 전기협회는 인가받은 상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전기협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관에는 아마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합회는 아직 정관이라든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추후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정관이라든가 이런 소정의 절차에서 연합회장은 별도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13개 단체면 전기 관련 협회가 다 포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연구원 등 13개 협회·단체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가받아서 설립된 협회가 몇 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협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업부 인가받은 협회들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한다는 규정만 놔두고 인가받아서 협회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법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전기협회 말고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본 칙……

○**김한규 위원** 그러면 단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다 존재하고 전기협회만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히 통폐합돼 가지고 전기산업연합회가 전체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될 수 있어서 계속 산자부 인가 협회로 활동을 할 텐데,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창구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산업발전법이 만들어져서 전기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기산업 발전에 관한 대표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공사협회라든가 이런 각 개별 조합에서, 협회에서 했던 것들을 연합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연합회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기산업연합회는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임원진들을 보니까 대부분 공기업 사장들이네요. 아니면 준공공기관들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전기협회가 그렇고요. 전기산업연합회는 아마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다시 구성할 겁니다.

○**김원이 위원** 차관님, 그러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가 지정되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위임·위탁 사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위임·위탁 사업을 수행할 법정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원이 위원** 그런 위임·위탁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가 전력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 정보화 촉진, 전력 분야 해외시장 진출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해외시장 진출할 때 같이 업계가 총괄 지원하는 역할들을……

○**김원이 위원** 그러면 법정단체가 지정이 안 되면 그런 사업에 약간 차질이 우려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차질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된 원 도우로서의 역할들,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해 낼 수 있는 대표단체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효과성, 위탁사업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이 소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김정호 위원님이나 김한규 위원님이나. 그러면 이게 엄청 서둘러야 되는 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속도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산업 업계에서 이런 연합회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일단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이 올라온……

○**송재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한규 위원** 그리고 업무의 위탁은 지금도 법에 있잖아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에 아까 말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7 호까지 쭉 현재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법에 근거가 없어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 못 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자부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어디든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연합회에만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단체는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위탁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냥 여러 단체들을 다 통폐합해서 전기산업연합회가 통일적 창구로 되도록 법에 아예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단체들이 자기네들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찬성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창구를 저쪽으로 일원화해서 자기네들이 소멸된다는 것에 동의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이 더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법정단체가 되면 지금은 사업비 베이스로 가던 것을 나중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협회 자체가 안정화가 돼서 원하고 있을 텐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실익이 잘 안 느껴집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 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인데 그 법정단체 밑에 미용협회라든가 피부미용협회라든가 게임방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들은 그대로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는 큰 단체 밑에 각각의 협회들이 또 존재해서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는 협회가 운영이 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꽤 여러 협회들이 있을 거고 법정단체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전기협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거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정 연합회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섬유 분야에도 섬유산업연합회가 있고요 섬유산업연합회 밑에 피복 조합이라든지 의류생활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고 관련된, 총괄하는 섬유산업연합회가 있고 말씀하신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요.

아마 전기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인 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들, 개별적 이해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전기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업계에서 갖고 있었고 마침 4월 10일 전기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전기의 날 행사가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런 역할들을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원도우를 만들어서 상당히 크게 해서 전기인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전력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데 연합회에서 아마 역할들을 상당히하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개발, 인력 사업, 정보화 촉진과 같은 위탁사업을 연합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책임지고 관련된 협회들까지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까지 전기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기협회가 없어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협회가 이 연합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 연합회 역할을 지향했습니다마는 전기협회가 사실상 회장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물론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전기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력 위주로 전기협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데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전기협회의 기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 조직이 따로 있고 역할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런데……

○**이종배 위원** 그런데 전기협회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연합회라는 것은 이 전기협회를 같이 묶는 그런 단체이지 이게 전기협회만 대변하거나 전기협회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단체를 연합해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전기협회는 이제까지 한계가 전기산업만 담당을, 위주로 하는 협회 기능을 갖고 있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기협회는 특별한 기능이 별로 없었네. 그냥 연합회 역할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니요, 두 가지 다입니다.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었고요. 연합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기 관련된 기능만 협회 역할들을 했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연합회에는 공사협회도 있고 전기기

술인도 있고 공제조합도 들어가 있고 전기산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 전기……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기협회가 하던 일은 누가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러니까 이전에 전기협회가 하던 일을 전기산업연합회가 담당을 하면서……

○이종배 위원 연합회라는 것은 각 단체들 모여 가지고 모든 단체의 권익이라든지 또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전기협회가 하던 일을 연합회에서 한다, 그거는 이름 자체도 좀 모호하잖아요. 그냥 전기협회의 기능을 하던 건 그냥 하고 전기협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모아서 연합회를 만든다 이거는 이해가 좀 쉽게 가는데 연합회가 전기협회 하던 일을 같이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협회가 하던 기능보다 더 포괄적인 업무를……

○이종배 위원 글쎄, 포괄적인 업무 다…… 연합회라는 게 모든 단체를 다 대변하고 모든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집합체잖아요, 집합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기존의 전기협회가 하던 일은 누가 하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협회를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기협회가 연합회 역할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연합회 역할을 100%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관련된 분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기 분야에만 협회 역할들을 했었지 전기공사라든지 기술인이라든지 전기공제 관련된 사업들,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익 대변 기능들은 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봉 위원 잠깐만요.

○이종배 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기존의 전기협회에서 하던 일은 그냥 하면서 다른 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연합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재봉 위원 지금도 이 조직표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처, 원자력기술기준처 해서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네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저는 일정히 해 왔다고 보는데 연합회로 전환할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다음에 논의해 주시지요.

○송재봉 위원 여기 보니까 법정단체 추진 TF도 있네요. 그러면 TF가 좀 더 정리를 해서 합당한 필요성과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예, 그럼시다.

○소위원장 박성민 원안 의결할까요?

(웃음소리)

김정호 위원님, 원안 의결할까요?

○김정호 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현황 자료를 좀 더 보고 다음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 의사일정 2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현 제2차관님을 비롯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및 보좌진님,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 ○출석 위원(12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송재봉  
이종배 장철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안창용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수소경제정책관 박덕열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투자정책관 유법민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